서울지방우정청 공고 제 2023 - 37호

2023년도 제1회 서울지방우정청 우정9급(집배)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서울지방우정청에서 시행하는 2023년도 제1회 우정9급(집배)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7일

서울지방우정청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직 급	직렬 및 직종	선발예정인원(62명)	근무예정기관	업무내용
우정 서기보	우정직 (집 배)	- 일 반 : 59명 - 장 애 : 3명	서울지방우정청 소속우체국(18국) ※ 구분모집표 참조	우편물배달 및 수집업무

< 모집단위(우체국)별 구분모집표 >

(단위 : 명)

구 분	우체국	선발인원	구 분	우체국	선발인원	구 분	우체국	선발인원
일반	서울중앙	2	일반	서울강남	10	일반	서울용산	4
	서대문	2		서울성북	2		서울노원	5
	서울광진	2		서울강동	2		서울중랑	3
	서올마포	2		서울양천	1		서울도봉	3
	서울관악	3		서울강서	4	장애	서울강남	1
	서울은평	1		서울동작	2		서울강서	1
	서울영등포	5		서울서초	6		서울노원	1
계	62명							

※ 공무원임용령 제45조 제6항에 따라 **합격자는 최초로 임용된 날부터 4년 이내 우정사업본부의 타 기관(총괄국)으로 전보될 수 없습니다.**(응시원서에 반드시 응시우체국을 기재)

2. 근거 법령

ㅇ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및 공무원임용령 제4조, 제16조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의2
ㅇ 균형인사지침 /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3. 응시자격 및 요건

가. 공통사항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같은 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른 피치료감호자
- 「공직선거법」제266조제1항에 따른 선거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자
- 「병역법」제76조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제2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 「정치자금법」제57조에 따른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자
  ※ 공무원 임용제한 기간 등은 개별 법령에 따름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ㅇ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5.12.31 이전 출생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ㅇ 학력제한 없음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만 가능)

ㅇ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서울,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

나. 장애인 구분 모집 응시 대상자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ㅇ「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ㅇ 장애인 구분 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ㅇ 장애인은 일반분야에 비장애인과 동일한 일반조건으로 응시가 가능하나 중복 접수(예시 : 일반분야와 장애인분야 모두 지원)는 할 수 없음

○ 장애인 구분 모집 응시 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등록증, 국가유공자증)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다. 응시자격 요건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자격요건	1. 제1종 또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소지한 자 2. 제2종 소형면허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소지자 ※ 자격 요건 1번 및 2번 모두 충족해야함

라. 우대요건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공 통】

▸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자격 취득 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경력은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한 이후의 경력을 인정

【세부 사항】

관련분야 경력	○ 우편물 배달, 수집 또는 소포(민간택배 포함) 업무
無음주운전 경력	○ 운전경력증명서 상 음주운전 경력이 없는 자 * 음주운전 경력을 확인(감점식)
자격증	○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물류관리사, 유통관리사 3급 이상

※ (관련분야 정의) 우편물 배달, 수집 또는 소포(민간택배 포함)업무

- 단, 아래 경력은 우정직(집배) 업무와 유사한 경력으로 50%만 적용된 환산경력으로 인정
  · 우체국소포원·특수지 집배원 경력 및 舊재택위탁배달원의 '20년 이전 경력

* 근거 :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기준

★ 소포업무 인정기준

① 소형의 ② 다양한 물품을 ③ 발송인(수탁자)과 택배업자가 일정한 계약(접수)을 통해 ④ 운송 등을 위해 포장을 하고 ⑤ 부착된 운송장(기표지)에 기재된 장소에서 ⑥ 다수의 수취인(수하인)에게 인도하는 행위

- 소포업무가 아닌 특정물품의 배송업무, 퀵서비스, 대형마트 주문 · 배송 또는 내근직종의 근무경력 불인정

※ 가점요건(적극적 서류전형에만 반영) : 한국사검정능력시험 6급이상('17.1.1. 이후 취득), 취업지원대상자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것에 한하여 인정

4.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의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할 경우 적극적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의해 3배수로 합격자를 결정

* **서류전형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요건(관련분야 경력, 無 음주운전 경력, 자격증)**

○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인증서* 보유 시 3% ~ 5% 가점 부여, 의사상자는 가산비율에 따라 5%~3%, 취업지원대상자는 가산비율에 따라 10% ~ 5% 가점 부여

□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가산점 - 적극적 서류전형에만 적용**

○ 고급(1등급, 2등급) : 5점, 중급(3등급, 4등급) : 4점, 초급(5등급, 6등급) : 3점

*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등급별 차등배점, '17.1.1.이후 취득 자격증만 인정

□ **의사상자 등 가산점 - 적극적 서류전형에만 적용**

○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 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의사상자 등 가산점은 10명 이상 선발단위에만 적용
- 가산점 적용 대상자는 응시원서 접수시 이력서 기타 우대사항란에 가점적용비율 5%, 3%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입(원서접수 전 본인이 직접 확인)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 적극적 서류전형에만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 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은 4명 이상 선발단위에만 적용(국가보훈처 추천 대상자는 4명 미만에도 적용)
- 다음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는 서류전형시 10%,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가산점 적용 대상자는 응시원서 접수시 이력서 기타 우대사항란에 가점적용비율 10%, 5%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입(원서접수 전 본인이 직접 확인)

나. (제2차 시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의 평정요소별로 '상'·'중'·'하'로 평가

- 평정요소(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3항)

(5가지 평정요소)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최종합격자 결정)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 '중', '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상관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함

○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5. 응시서류 접수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3. 3. 6.(월) ~ 3. 9.(목), 09:00~18:00

※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반드시 익일특급 등기우편 접수)

○ 접 수 처 : 서울지방우정청 소속 모집단위우체국(채용예정관서)의 인사담당 부서【붙임1 : 접수우체국 현황】

○ 접수방법 : 지정된 접수처에 직접 또는 우편접수

* 우편접수시 봉투 겉면에 「우정9급(집배) 경력경쟁채용 응시원서 재중」기재
* 토·일요일, 공휴일은 접수불가, 평일 12:00~13:00 접수불가

나. 유의사항

- ㅇ 응시원서는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다른 모집단위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 ㅇ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ㅇ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ㅇ **제출된 증빙서류(경력.자격증 등)는 관계기관에 진위를 확인할 예정**이며, 허위사실 기재 또는 위·변조 시「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에 의거 5년간 국가공무원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6.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구 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발표
일 자	‘23. 3. 16.(목)	‘23. 3. 25.(토)	‘23. 3. 31.(금)

※ 서울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se)의 채용공고란에 게시
※ 응시자의 응시번호는 원서접수 마감 후 개별문자 발송
※ 면접시험 장소 및 시간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게시
※ 상기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7. 제출서류 ※ 증빙자료가 없는 경력, 자격 등은 인정하지 않음

가. 응시원서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부착) 1부(필수) 【붙임2】

* 저소득층 해당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반드시 증빙서류 제출)

나.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필수, 워드작성 가능) 【붙임3~5】

다. 운전경력증명서 1부(경찰서,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인터넷 발급) 및 운전면허증 사본 1부(필수)

* 면허취득일 이후 **운전경력 전체현황**이 확인 가능한 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 **운전면허경력 란에 면허취득일자는 반드시 표기**되도록 조회된 증명서 제출

라. 병역사항이 기재 된 주민등록 초본 1부(필수)**(공고일 이후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표시 및 주소 변동 이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발급 병역사항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병적증명서 별도 제출

☞ 초본 교부 신청시, 신청내용을 「**전체포함**」으로 선택하여 발급

마.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 한) 【붙임6】 및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 한)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제출한 서류에 한해서 우대요건을 판단함
* 기관 · 회사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제출(발행기관의 증명이 있는 객관적 확인이 가능하여야함)
* 사업장 폐업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관련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예_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으로 보완하여야 하며, 이때 검증을 위해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는 필수 제출

< 경력(재직)증명서 제출시 주의 사항 >

- 근무기간(연월일까지 기재),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내용**, 발급기관(회사)명, **직인**, **발급담당자 전화번호** 등을 명시
- 경력(재직)증명서에 직무분야와 관련된 경력이 미기재 또는 모호할 경우, 발급부서 확인(서명) 또는 직무분야와 관련 경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인사기록카드 등) 첨부
- 제출한 경력의 확인을 위해 필요 시 4대 보험 자격 득실 증명·확인 및 소득금액 증명(국세청 발급)을 제출받는 절차가 있음
-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하여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분야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 경력기간은 주당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며, 시간제 근무 경력은 기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 한)

사.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필수)【붙임7】

8. 기타 사항

가.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없)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나.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 기재사항이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이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바. 공고한 내용을 변경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최초 공고매체를 통해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사.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토요일 휴무를 원칙으로 하나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예시) 화요일~토요일(5일) 근무, 월요일 휴무

자. 응시자는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이상 자격증과 제2종 소형면허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소지자로서 실제로 자동이륜차를 운전하여 우편물배달이 가능한 자 이어야 합니다.

※ 일평균 2,000여통 이상의 통상우편물과 20Kg(최고 30Kg)의 다량의 소포를 자동이륜차에 적재한 후 직접 운전 배달하기 위한 체력 필요

차.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붙임8 서식)를 작성하여, 이메일(pjh0326@korea.kr)로 제출하시면 반환해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 : '23. 3. 31.(최종합격자 발표일) ~ '23. 4. 30.

카. 응시자가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타.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우정청 인력계획과(☎02-6967-91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본 공고문은 집배원 채용안내 홈페이지(postman.koreapost.go.kr), 나라일터(www.gojob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직무기술서

임용예정기관명	담당예정업무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서울중앙우체국 등 18개 우체국	**우편물 배달 및 수집**	우정9급(집배)	총 62명

주요업무	○ **우편물 배달 및 수집** - 우편 차량, 원동기장치 운전 - 관할 지역 우편물 구분·수집·배달 - 우편물 배달 및 수집 자료 전산 등록 및 처리 - 우편물 배달 및 수집 관련 부대업무
필요역량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 **(직무 역량)** 안전의식 실천능력, 성실한 업무처리능력, 팀워크 지향 의사소통능력, 고객(민원)응대능력
필요지식	○ 차량 및 원동기장치 운행 관련 지식 ○ 사고예방 및 교통법규 관련 지식 ○ 집배관련 시스템, PDA 장치 사용을 위한 정보화 관련 지식 ○ 우편물 배달 및 수집 관련 민원 해결을 위한 관련 지식

응시자격요건	**관련분야 : 우편물 배달·수집 또는 소포(민간택배 포함) 업무**	
	자격증	① ~ ② 모두 충족해야 함 ① 제1종 또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 소지한 자 ② 제2종 소형면허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소지자
우대요건	**관련분야 경력**	ㅇ 우편물 배달, 수집 또는 소포(민간택배 포함) 업무
	無음주운전 경력	ㅇ 운전경력증명서상 음주운전 경력이 없는 자 * 음주운전 경력을 확인(감점식)
	자격증	ㅇ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물류관리사, 유통관리사 3급 이상
가점요건	○ 한국사 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 6급 이상 인증서 보유시 3~5점 부여 ○ 취업지원대상자 5~10점 부여 ○ 의사상자 3~5점 부여	

【붙임1】

접수우체국 현황

□ 모든 응시자는 복수지원 할 수 없음(근무예정 우체국 1곳만 지원 가능)

□ 접수일자 : 2023. 3. 6.(월) ~ 3. 9.(목), 4일간

* 토 ·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 불가하며, 우편접수는 원서접수 마감일(2023.3.9.) 익일특급 등기우편 접수 소인분까지 유효

접수우체국명	전화번호	주 소	우편번호
서울중앙우체국	02-6450-1412	서울 중구 소공로 70	04535
서대문우체국	02-390-9212	서울 서대문구 성산로20길 9	03727
서울광진우체국	02-2049-0513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 2	05048
서울마포우체국	02-6901-7652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89	04156
서울관악우체국	02-6911-0512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43	08755
서울은평우체국	02-350-3523	서울 은평구 진관2로 29-8	03306
서울영등포우체국	02-784-5230	서울 영등포구 선유동2로 6	07219
서울강남우체국	02-2040-4133	서울 강남구 개포로 619	06336
서울성북우체국	02-3396-0121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310	02733
서울강동우체국	02-440-2913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12길 57	05350
서울양천우체국	02-2646-0941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117	07988
서울강서우체국	02-2660-8972	서울 강서구 강서로 448	07582
서울동작우체국	02-824-7975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 22길 77	07056
서울서초우체국	02-3498-8073	서울 서초구 동산로 19	06779
서울용산우체국	02-6966-0812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18	04386
서울노원우체국	02-950-3272	서울 노원구 중계로 123	01740
서울중랑우체국	02-2239-0512	서울 중랑구 망우로 271	02098
서울도봉우체국	02-3499-3664	서울 도봉구 노해로 150	01450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응시번호	성명	모집단위	임용예정 직급	응시자격요건 (해당란 체크)
		( ) 우 체 국	우정9급 (집배)	□ 제1종 또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 소지 □ 제2종 소형면허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소지

▣ 제출서류 맨 앞에 합철하여 제출합니다.

목 록	필수여부	제출여부
1. 응시원서	필수	□
2. 이력서	필수	□
3. 자기소개서	필수	□
4. 직무수행계획서	필수	□
5. 운전경력증명서 1부(원본) * 공고일 이후 발급	필수	□
6. 운전면허증 1부(사본)	필수	□
7. 주민등록초본(원본) * 공고일 이후 발급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필수	□
8. 경력(재직)증명서(원본) (사업장 폐업 등으로 원본 제출이 어려울 경우 사본 제출 가능)	해당자 한	□
9. 우대요건 해당 자격증(사본)	해당자 한	□
10.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사본)	해당자 한	□
11.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해당자 한	□
12. 의사상자 등 대상자증명서 1부	해당자 한	□
1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필수	□

* 제출서류 해당 항목에 대하여 √표시 후 제출
*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집게**를 사용하여 편철 제출**(스테이플러 사용금지)**

붙임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작성자(응시자) : (서명)

【붙임2】

응 시 원 서

본인은 **서울지방우정청 주관 2023년 제1회 우정9급(집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3년 3월 일

서울지방우정청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직급 (응시분야)	우정9급(집배)		(한자)	
채용예정관서				
생년월일	년 월 일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우)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곳 (5천원)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

※응시번호		**응 시 표** (2023년 제1회 우정9급(집배)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직급 (응시분야)	우정9급(집배)	성명	(한글)
채용예정관서			(한자)
2023년 월 일 서울지방우정청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응 시 원 서 작 성 요 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우정9급(집배)

3. 채용예정관서 : 본인이 응시하고자 하는 우체국을 기재

4.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5. 성명 · 생년월일 · 전자우편 · (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6.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전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만 가능합니다.

7. 정부수입인지 : 가까운 우체국에서 아래 해당 금액의 인지를 구입하여 붙이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전자수입인지 가능)

   - **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8. 제출서류는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운전경력증명서, 운전면허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경력증명서, 자격증,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순으로 편철하여 제출
   (모든 서류는 금회 시행하는 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출)

※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하며,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등은 집배원 채용안내 홈페이지, 서울지방우정청 홈페이지/채용공고란에 게시합니다.

【붙임3】

이 력 서

1. 공통사항					
※응시번호		모집구분	일반 또는 보훈	모집단위 (채용예정기관)	

2. 응시자격			
운전 면허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3. 우대요건				
경력 (우편물 배달, 수집 또는 택배 업무)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 위	담당업무
자격증	자격증명	자격(등록)번호	취득일	자격 검정기관

4. 가점요건					
한국사 능력검정	인증등급	인증번호		시험일자	시행기관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비율	보훈번호	등록일자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의사상자 등 대상자	가점비율	의사상자 번호	등록일자	의사상자 등과의 관계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 년 월 일

성 명 : (인)

※ 본인이 직접 자필 또는 워드작성가능하며 작성자는 자필로 이름과 서명 기재함
※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 부주의로 잘못 기재되거나 표기되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붙임4】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응시직급	※ 응시번호
	우정9급(집배)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동기 및 귀하가 현재까지 달성한 업적과 장점 등을 사례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 최근에 발생한 사건부터 기술하도록 하되, 필요시 별지 사용 가능
- 분량은 A4용지 3매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 하단의 작성일자, 작성자 성명 및 서명 반드시 기재

2023. . . 작 성 자 : (인/서명)

【붙임5】

직 무 수 행 계 획 서

☐ 응시직급 : 우정9급(집배)

☐ 성　　명 :　　☐ ※ 응시번호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응모직위에 대한 직무수행계획서(A4 4매 이내 작성)

1. 본인이 해당직위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이유
2. 해당직위와 관련이 있는 경력 및 연구실적
3. 해당 직위의 업무추진 전략 및 수단 등

※ 14포인트, 휴먼명조(각 항목별 번호는 진하게, 기타 내용은 보통)

※ 하단의 작성일자, 작성자 성명 및 서명 반드시 기재

2023.　　.　　.　　작 성 자 :　　(인/서명)

【붙임6】

제 2023- 호

경 력 증 명 서 (예 시)

인적사항	성명	한 글		생년월일 (주민등록상)	. . .
		한 자			
	주 소				

경력사항	근무기간		근무부서	담당업무
	부 터	까 지		
				구체적으로 기재

근무연한	년 월	최종직위 또는 직급	
퇴직사유			
용 도	우정9급(집배) 채용시험 응시 제출용		
회사소재지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2023년 월 일

기관명 또는 회사명(관인 또는 회사대표자인)

작성담당부서	
작성책임자	
작성담당자	
연락처	

※ 기재된 사항이 사실이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되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가 있을 경우 기관발급용 양식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붙임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경력·자격·면허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채용심사를 위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주민등록번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4조 제5항

2.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복수국적자,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공무원 채용 관리 (복수국적 조회)	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개인정보(자격증·경력·학위) 확인기관	공무원 채용 관리 (자격확인)	자격증, 경력사항, 학위 등 응시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인사혁신처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여부 회신	성명, 주민등록번호*, 시험연도, 시험명, 응시제한기간, 관보게재일, 처분청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행정정보고등이용 증적 보관)

*** 주민등록번호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4조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3년 월 일

성명 : (서명)

서울지방우정청장 귀하

【붙임8】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3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서울지방우정청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